

삼성전자 전자폐기물(WEEE) 재활용 및 폐기 서비스 공급자 요구사항

1. 목적

본 요구사항의 목적은 순환경제에 기여하고, 사내 전자폐기물 및 장비, 폐제품 회수 프로그램, 그리고 생산 및 제조 폐기물 등을 포함하여, 삼성전자의 글로벌 운영 및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본 요구사항의 준수가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진 않는다.

2. 적용 범위

본 문서의 요구사항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폐기물을 수집, 보관, 처리하는 모든 전자폐기물 관련 업체(공급자)에 적용된다. 공급자는 본 문서에 명시된 삼성전자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준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모든 삼성전자 임직원은 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일반 사항

3.1 공급자는 폐기물 관리 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환경 및 작업장 관련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 법률과 국제법을 준수해야한다.

3.2 공급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바와 같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직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없는 아동 노동 또는 강제 노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3 공급자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 의무를 문서화한 운영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공급자는 시설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환경, 보건 및 안전 측면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협력사의 활동 및 관련 법률 조항 기록을 관리하고, 모든 관련 당국이 요구하는 유효한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

3.4 공급자는 재활용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은 예컨대, ISO 14001 인증, 독립적인

환경경영시스템, 또는 국가 공인 경영시스템이 될 수 있다. 공급자는 환경 및 작업 안전 프로세스를 문서화 하고, 이러한 기록을 보관하고, 모든 임직원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5 공급자는 삼성전자 요구사항의 위반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보건, 안전, 환경,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삼성전자 공급자 담당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4. 보험 및 비상계획

4.1 공급자는 아래 항목에 명시된 모든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 산업재해
- 일반 책임
- 자동차 책임
- 환경 책임
- 오염 책임
- 재정보증

4.2 공급자는 폐쇄 시,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과 시설을 적절하게 폐기하는 방법을 문서화한 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최소한 2 년에 한 번 업데이트 해야 한다.

4.3 공급자는 예상치 못한 공장 폐쇄를 보장하는 적절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현장 관리

5.1 공급자는 운송 또는 제 3 자 이전을 포함하여 최종 처리까지 전자폐기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업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유지해야 한다.

5.2 공급자는 이전을 보여주고 전자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급자의 보증을 문서화 하기 위해 3 년 동안 영업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아래 사항들이 모니터링 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 처리 시설의 운영 프로세스와 운영 위험 평가
(예: 유해 폐기물 관리)
- 현장의 환경 배출물
- 폐기물 폐기 과정의 유해 물질 및 오염물질 배출
- 폐기물, 특히 유해 폐기물의 이동 및 보관
- 보관 관리 시스템의 운영

- 보관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체 체인에 걸쳐 전자폐기물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다운스트림 물질 흐름
- 임직원 보건 및 안전교육 결과
- 폐기물의 보관 물량, 재활용, 회수, 폐기 및 인도량, 물질 출고내역, 비상 대응 계획, 화재 예방 및 진압 절차, 장비 오작동 복구 계획 등

5.3 공급자는 화재, 폭발, 각종 사고, 예기치 못한 유출, 그리고 기상 관련 비상상황 등과 같은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고해야 한다. 지역 비상 대응 당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 해야한다.

6. 데이터 보안

6.1 하드 드라이브 같은 모든 데이터 저장 장치와 CD, DVD, 테이프, 또는 다른 유사 아이템 등의 기록 미디어는 분쇄, 파쇄, 절단, 용융, 소각, 메모리 저장 소재 천공에 의해 완벽히 제거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

6.2 공급자는 삼성전자 담당자가 요청 시 장치 일련번호 및 파기 일자를 포함하여 데이터 장치의 파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7. 처리 및 폐기

7.1 공급자는 재활용 물질 회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7.2 EU WEEE 지침에 정의되어 있는 수은, 배터리, CRT, PBA 등의 물질과 부품은 환경 친화적인 운영에 경쟁력과 경험이 있고 가용한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는 재활용 업체에 의해 처리 되어야 한다.

7.3 공급자는 전자폐기물이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전자폐기물을 통제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 국가간 이동

8.1 공급자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폐기물 처리 물질을 OECD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운송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통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수출입 당사국 간에 사전 승인 및 허가가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8.2 모든 물질의 운송 전에, 공급자는 필요한 모든 현지, 국경 및 국제 허가, 인증, 면허, 사전 승인, 동의, 권한을 획득하였음을 확인하고 문서화 해야 한다.

9. 다운스트림 공급자

9.1 1 차 공급자는 재활용 서비스를 수행할 하청 업체를 공개해야 하며 하청 업체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9.2 1 차 공급자는 모든 단계의 폐기물 상태가 끝날 때까지, 전자폐기물 최종 처리자까지, 전자폐기물 다운스트림 처리자를 감사해야 한다.

9.3 다운스트림 감사 보고는 물질 관리와 필요한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환경 보건과 안전 측면도 포함해야 한다.

9.4 다운스트림 감사 보고는 매년 수행되어야 한다. 다운스트림 감사는 현장 점검 또는 문서 증빙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1 차 공급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10. 감사

10.1 공급자는 본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초기 감사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삼성전자는 공급자에 사전 통지 후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는 삼성전자가 선임한 제 3 자 감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10.2 공급자는 감사 목적으로 요청 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록과 정보는 물질 추적 문서, 물질 잔고, 폐기 기록, 배출 모니터링, 작업자 안전, 정기 공지, 교육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다.